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노후설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

1. 제정 취지와 배경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의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된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최근 6년 간(2014년~2019년)통계로 살펴보면 화학사고의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로 가장 높고 작업자부주의 36%, 운송차량사고 20%, 기타 3%이다.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제조원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가 제대로 안되면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화학사고 원인분석
(2014~2019 환경부)

사고원인	발생율
시설관리미흡	41 %
작업자부주의	36 %
운송차량사고	20 %
기타	3 %

○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일반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주고 감시감독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는 기업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기업에게만 책임을 주고 있다. 화학사고는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기업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까지 감시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 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주요내용과 시사점

1) 노후설비 관리주체 확대와 의무강화

① 노후설비의 정의와 범위

- 현재까지 노후설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명확한 관리대상 노후설비 정의가 필요하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를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 노후설비의 범위를 현재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한 화학물질, 고압가스, 위험물 설비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 2. “노후설비”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화학물질, 고압가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20년 이상된 설비를 말한다.

가.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나.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다.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② 노후설비 공공관리주체의 의무강화

-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의무를 사업주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에 관리주체와 공공관리주체 규정이 있다.
-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개별관리가 되고 있어서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공관리주체인 국가의 노후설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 또한, 국가는 관리주체가 작성한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노후설비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제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는 통보받은 계획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현재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전무하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제11조의2에 사업장이 작성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장 노후설비 개선계획서의 제대로된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설비 긴급안전점검을 직접 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11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제출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노후설비개선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동자, 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①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시에 노동자 참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공정안전은 해당 노동자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계획서 작성, 제출 시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 또한, 현장노동자가 노후설비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관리주체에게 직접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조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주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②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11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제출 등)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 ‘화학물질관리법’은 제11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제공받은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해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와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따라서 이미 사업장 대정비 작업이나 정기보수 기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기업의 주장이 신

뢰성을 확보하고 제대로된 노후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제11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제출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장을 출입·조사할 경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설비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약칭 노후설비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노후설비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노후설비"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화학물질, 고압가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20년 이상된 설비를 말한다.
 - 가.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 나.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 다.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노후설비를 소유한 사업장을 말한다.
4. "공공관리주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노후설비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6. "긴급안전점검"이란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노후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노후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노후설비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노후설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노후설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노후설비의 보유현황
 2. 노후설비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재해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③ 관리주체는 노후설비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노후설비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노후설비관리계획을 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노후설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내용 등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후설비의 종류) 노후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 20년 이상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2. 고압가스 설비 중 20년 이상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위험물 설비 중 20년 이상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노후설비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노후설비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유지관리 등

제10조(노후설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노후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노후설비를 제6조 2항 노후설비관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비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1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3년 마다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는 통보받은 계획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노후설비 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노후설비개선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노후설비개선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조사할 경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설비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⑨ 노후설비개선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노후설비개선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노후설비관리계획
 2. 제9조 및 11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설비개선계획서
 3. 그 밖에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소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노후설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후설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후설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노후설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에 따른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후설비개선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나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나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